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13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김용만 · 박범계 · 강준현
진선미 · 박찬대 · 김영배
박지원 · 김현정 · 김남근
이인영 · 김승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손해배상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확산 차단,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보전 등 조사·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비협조 및 자료제출 거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처분을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제

도 및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39조의2 개정)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전반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나.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정)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다.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정례화(안 제63조의2 개정)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63조의3 신설)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 이행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마. 긴급 보호조치 명령 신설(안 제64조 개정)

법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즉시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가능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63조의2”를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2.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

우: 출입·검사 협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조

치 명령의 이행

4. 제64조제4항에 따른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긴

급 보호조치 명령의 이행

5.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공표명령의

이행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이 법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침해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7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3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4조제4항에 따른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 설>

의2, 제63조의3, 제64조제4항 -

 -----.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

----- . <후단 삭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

②·③ (생략)	<u>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④ (생략) <u><신설></u>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u>
⑤ ~ ⑦ (생략)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 ⑤ (생략) <u><신설></u>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u>

⑥ (생 략)

<신 설>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2.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 ③ (생략)
<신 설>

하는 경우: 출입·검사 협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4. 제64조제4항에 따른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긴급 보호조치 명령의 이행
 5.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공표 명령의 이행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이 법

	<u>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침해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73조(벌칙)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4. (생략) 25. <u>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u>	② ----- ----- -----. 1. ~ 24. (현행과 같음) <u><삭제></u>

<u>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 · 서</u> <u>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u> <u>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u>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u> <u>한다)에 따른 출입 · 검사를</u> <u>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u>	<삭 제>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 <u>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u>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